0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에게만 인정되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 ③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 ④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 와 관련하여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 ① I O I 청구인 문화방송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설립목적은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운영을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지위에서 그 제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현재 2013,9,26,2012현마271).
- ② IOI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u>외국인 근로자라고</u>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현재 2007.8.30. 2004현마670).
- ③ | O |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현재 2004,5,27, 2003현가1등).
- ④ | X | 청구인 진보신당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는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현재 2008.12.26, 2008현마419등).

✓ 정답 ④

2022 경간후보

02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와 관련한 게시판·대화방 등도 정치적 의사를 형성 ·전파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고 따라서 언론·출 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 ② '식품 등의 표시기준' 상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 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특허권을 침해한다.
-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부칙조항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해설

- ① | 이 | 현재 2010.2.25. 2008현미324등
- ② IOI 위 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위해적 요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하에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식품에 숙취해소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를 금지하면 숙취해소용 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제품의 제공을 차단함으로써 숙취해소의 기회를 국민으로부터 박탈하게 되므로, 숙취해소용 식품의 제조·판매에 관한 영업의 자유 및 광고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들은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으로 인하여 특허권자인 청구인들조차 그 특허발명제품에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고 "천연차"라는 표시만 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받는 재산권인 특허권도 침해되었다(현재 2000, 3, 30, 99 현마143).
- ③ | O |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언론증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동법 제5조의2 제1항).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동조 제2항).
- ④ | X | 이 사건 부칙조항은 판결서 공개제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공개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 판결서 공개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이나 용역의 부담을 경감·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부분적인 개선 방식을 취할 수도 있으므로, 입법자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감안해서 위부칙조항과 같이 판결서 열람·복사에 관한 개정법의 적용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비록 전자적 방법은 아니라 해도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이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열람·복사할 수 있는 판결서의 범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위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현재 2015.12.23. 2014현마185).

✔ 정답 ④

2022 경간후보

03 선거권 및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 ②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2차적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선거구 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위헌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 이다.

해설

- ① | O |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므로 선거제도는 첫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둘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여야 하고, 셋째,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 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원리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09.6.25. 2007현마40).
- ② IOI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어야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개발불균형이 현 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한다(현재 2020.9.24, 2018현마325 등).
- ③ | O | 선거구구역표는 전체로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다른 선거구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대하여 위헌선언하는 것이 상당하다(현재 2014.10.30, 2012현마192 등).
- ④ | X | 지역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기본적으로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므로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제공 금지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현재 2012,2,23, 2011헌바154).

✓ 정답 (4)

2022 경간후보

04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가. 전부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시행 전에 행하여졌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정지 · 배제조항을 적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조항 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나. 실제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최고 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보상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산 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법 조항의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더라 도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경우에 개정법 조항의 연장된 기간을 적용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라. 위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않는 「건축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해설♥

가. IOI 심판대상조항은 대처능력이 현저히 미약하여 범행대상이 되기 쉽고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도 더 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공소 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조항을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건에도 적용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연장함으로써, 그 범죄로 인해 훼손된 불법적인 상태를 바로잡아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소송 법의 공소시효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새롭게 규정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제

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이익이 공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현재 2021,6,24, 2018헌바457).

- 나. IOI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 적 급여를 실시하고 재해근로자 사이에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장해급여제도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이상 소득재분배의 도모나 새로운 산재보상사업의 확대를 위한 자금마련의 목적으로 최고보상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더라도,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보상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수급권의 내용을 일시에 급격히 변경하여 가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현재 2009,5,28, 2005현바20등).
- 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전반이 아니라, <u>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u>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정되어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하며,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나치게 보호한 나머지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정법조항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 비용을 화수할 수 있는 기간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임대차에만 적용할 경우 임대인들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이를 미리 반영하여 임대료가 한꺼번에 급등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정법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에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개정법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법조항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인 경우 개정법조항의 연장된 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익은 긴급하고도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21.10.28, 2019현마106등).
- 라. IOI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처럼 과태료만이 부과될 것이라고 기대한 신뢰는 제도상의 공백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그 보호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가, 이미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이나 부담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 반면,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법상태를 치유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을 증진하여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는 중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15, 10, 21, 2013현바248).

✓ 정답 ②

2022 경간후보

05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부고시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인정되나, 분쇄기를 이용하여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② 자동차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교도소 사동에서 인원점검을 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수형자들을 정렬시킨 후 차례로 번호를 외치도록 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육군장교가 민간법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 의무를 부과한 2020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 조항 및 2021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 ① | X | 주방에서 발생하는 오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환경 부고시 조항으로 인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려는 청구인들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고,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려는 청구인들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 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받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의 수질 악화를 막아 궁극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현재로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감량분쇄기의 판매·사용은 허용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수거용기에 수시로 배출할 수 있으므로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현재 2018.6.28. 2016현마1151).
- ② IOI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주시율,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부담에 비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현재 2021,6,24, 2019현바5).
- ③ IOI이 사건 점호행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거실 내 인원수를 확인함과 동시에 수형자의 건강상태 내지 심리상태, 수용생활 적응 여부 등을 살펴 각종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거나 사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할 수 없다(현재 2012.7.26, 2011현마332).
- ④ IOI 20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은, 육군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그 신분을 밝히지 않아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군 조직의 내부 기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육군 장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는 방법 등은, 군사보안 및 기술상의 한계가 존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약식명령의 범위도 한정되므로, 자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현재 2021,8,31, 2020현마12등).

✓ 정답 ①

2022 경간후보

06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②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문화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어떤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 ③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방지를 위한 예방적·관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관리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④ 교도소 수용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형자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 ① IXI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중여나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한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현재 2014,8,28, 2013현바119).
- ② IOI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 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자명한 한계가 도출된다. 결국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현재 2005,2,3, 2001현기9 등).
- ③ | 이 | 현재 2020.12.23, 2019헌바25
- ④ | O | 현재 2014.6.26, 2011현마150

✓ 정답 ①

2022 경간후보

07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는 것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에게는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① | O | 청구인들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시람들로서 심판대상계획에서 정한 출제 방향과 원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받는다. 한편 심판대 상계획이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계획은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것으로, 수능시험을 지상파방송국으로서 손쉽게 시청이 가능한 EBS의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는 경우 사교육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 심판대상계획은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한다거나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심판대상계획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18, 2, 22, 2017현마691).
- ② | O |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권은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헌재 2022,3,31, 2021헌마1230).

- ③ | X | 이 사건 징계조치 조항에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가해학생도 선도·교육하려는 입법 목적을 이 사건 징계조치 조항과 동일 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입법의 대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조치 조항에 의한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19.4.11, 2017한바140등).
- ④ IOI 우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를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객관적인 과정인 졸업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고등교육법이 그 목적과 운영방법에서 전문대학과 대학을 구별하고 있는 이상, 전문대학 과정의 이수와 대학 과정의 이수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의 이수자에게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대학에의 일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교육을 받을 권리나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현재 2010,11,25, 2010현만144).

✓ 정답 ③

2022 경간후보

08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
- ③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률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 ④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이다.

- ① | O |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 다면,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종의 '입법행위'로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역시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합치적인 법률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은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현재 2012, 5, 31, 2009현바123등; 2012, 7, 26, 2009헌바35등).
- ② IOI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우며, 헌법전문에 기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부분에 위배된다는 점이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현재 2008,11,27, 2008현마517).
- ③ | X | 유신헌법 일부 조항과 긴급조치 등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였다는 반성에 따른 헌법 개정사, 국민의 기본권의 강화·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u>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u>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현행헌법이다(현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④ | O |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현재 2004,12,16, 2004현마456; 2009,3,26, 2006현마72 등).

✓ 정답 ③

2022 경간후보

09 기본권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이 헌법에 부합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중에서 이익형 량의 원칙에 비추어 채권자의 재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 ②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판단하지 않는다.
-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유니온 샵(Union Shop) 조항은 특정한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용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④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하고,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될 때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특별관계에 있다.

- ① IXI 채권자취소권을 정한 이 사건 민법 조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수익자의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경우에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는 없고,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규범조화적 해석),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권자 보호라는 법의 정적 안정성과 관념적 권리인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의 범위도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나 수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현재 2007,10,25, 2005현바96).
- ② | O | 개인정보가 수록된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다.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전환 등에 관한 민감정보가 기재되는데, 형제자매는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 상황에서처럼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와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현재 2016,6,30, 2015현마924).
- ③ IOI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없고,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 중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조직강제가 가능한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현재 2005,11,24, 2002헌바95등).

④ IOI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특히 어떠한 법령이 수범자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따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되는 경우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서로 일반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여 행복추구권 관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되어야 한다(현재 2009,7,30, 2007현마1037).

✓ 정답 (1)

2022 경간후보

10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원진술자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②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상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 경우 피의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방착석요구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구「주택임대차보호법」조항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이라는 공시기능을 통하여 주택 양수인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① IOI 심판대상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나, 사건의 핵심 증거가될 진술증거에 관하여 왜곡이나 오류를 효과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 영상물이 제공할 수 있는 제한적인 정보 및 피고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형성과정을 고려할 때, 위 영상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탄핵만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부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반복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현재 2021,12,23, 2018현바524).
- ② | X |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 권으로서 보호된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하여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후방착석으로 인해 변호인은 적극적인 조력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현재 2017,11,30, 2016한마503).
- ③ IOI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미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자의 택시운송사업 종사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방법도 적절하다. 그러나 20년이라는 기간은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취업연령이나 취업실태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내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현재 2015,12,23, 2014현바446등).
- ④ | ㅇ |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

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임차인의 이름과 전입일 만큼은 공부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공시되어 거래의 안전이 보장되므로,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관계를 맺으려는 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이라는 공시기능을 통하여 주택 양수인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17,8,31, 2016현바146).

✓ 정답 ②

2022 경간후보

11 자격제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한 구「의료법」조항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 ② 세무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우대하는 것은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격증 소지 여부가 시험에서 우대를 고려할 객관적 근거가 되며, 가산점제도가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 및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특정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그 입법재량의 폭이 좁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 ① | O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행위'를 개인의 경제적 소득활동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근거로 삼으려는 청구인의 기본권,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의료행위를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현재 2002,12,18, 2001현마370).
- ② | O |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u>공인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u>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가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20.6.25, 2017현마1178).
- ③ IOI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공과 출신대학에 따라 로스쿨 입학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선택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최소침해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며, 로스쿨을 지원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현재 2009, 2, 26, 2007현마1262).

④ | X |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특정 전문자격의 등록취소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 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현재 2021,10,28, 2020현박221).

✓ 정답 ④

2022 경간후보

12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임용을 당연무효로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 ③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조항은 군 조직의 특수성,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의 상대적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④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구「공직 선거법」조항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해설

- ① IOI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이러한 자가 임용되다 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것으로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임용결격공무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라도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기는 하지만, 재직기간 중 사실상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등 민사적 구제수단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과 비교하여 사익 침해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현재 2016, 7, 28, 2014현바437).
- ② | 0 | 현재 2013.11.28. 2011현마565 등
- ③ | X |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전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사관의 임용연령상한을 27세로 제한하는 군인사법 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 첨단무기・정보를 바탕으로 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숙련 되고 기술력 있는 부사관을 조기에 발굴하여 양성할 필요가 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국가안위의 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로서 매우 중대하므로 최소침해성과 법인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14,9,25, 2011현마414).
- ④ IOI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자들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얼마든지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할수 있고,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점, 나아가 법 제16조 제2항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국민도 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현재 2007.6.28, 2004현마644등).

✔ 정답 ③

13 헌법상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학)

- ①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합의를 말하며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 ②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은 국민들이 원전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
- ③ 문화국가의 원리는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 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한다.
- ④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 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 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 ① | O | 조약의 개념에 관하여 우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u>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u>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헌재 2019,12,27, 2016헌만253).
- ② | X | '중대사고'를 비롯한 원전 사고가 본격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원전이 운영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고시조항에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시 필요한 방사 선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초안 작성시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민주주의 원리의 한 내용인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고시조항이 국민들의 정확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현재 2016,10,27, 2012현마121).
- ③ IOI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 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문화국가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현재 2004.5.27, 2003현개등).
- ④ IOI 현재 2021.11.25. 2017현마1384 등

✓ 정답

2022 경7 후보

14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사전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해산명 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집회 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 ③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 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④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호구역 안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안전 활동 의 일환으로 청구인들의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 등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해설♥

- ① | O |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해산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해산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먼저 자진 해산을 요청한 후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해산명령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16,9,29, 2015현바309등).
- ② | 이 | 현재 2003.10.30, 2000현바67등
- ③ IOI 살수차는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경찰장구나 무기 등 다른 위해성 경찰장비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에 해당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u>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u>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현재 2018.5.31, 2015현미476).
- ④ | X | 이 사건 공권력 행사는 경호대상자의 안전 보호 및 국가 간 친선관계의 고양,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것으로, 돌발적이고 경미한 변수의 발생도 대비하여야 하는 경호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호활동에는 다양한 취약 요소들에 사전적 · 예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공권력 행사는 집회장소의 장소적 특성과 미합중국 대통령의 이동경로, 집회 참가자와의 거리,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공권력행사로 인해 제한된 사익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 일부에 대한 제한으로서 국가 간 신뢰를 공고히 하고 발전적인 외교관계를 맺으려는 공익이 위 제한되는 사익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현재 2021 10 28 2019현마109).

✓ 정답 ④

2022 경간후보

15 소급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가. 부당환급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 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법인세법」부칙조항은「헌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 나.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조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 다.
- 다. 「헌법」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받거나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라.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선 동 주

2022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

① 1개

② 2개

③ 3개

(4) 47H

해설

- 가. IOI 심판대상조항은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전 환급세액을 수령한 부분까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개정된 징수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한다. 법인세를 부당 환급받은 법인은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조세채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정 전 법인세법 이래에서도 환급세액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하여 환수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여 진정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현재 2014, 7, 24, 2012현바105).
- 나. | x |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 배반적 성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이러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현재 2011,3,31, 2008헌바141등).
- 다. | x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제13조제1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 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 라. | O | 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의 규정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현재 1996.2.16. 96현가2등).

✓ 정답

2022 경간후보

16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시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학교 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을 금지할 필요성은 납골시설의 운영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거 나 개인·문중·종교단체·재단법인이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③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 ① | O |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 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하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2012도13718).
- ② | O |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무덤을 경원하고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를 가지고 살아왔다. 납골시설을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가 과학적인 합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풍토와 정서가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과 공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학교 정회구역 내에 납골시설을 금지할 필요성은 납골시설의 운영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거나 개인ㆍ문중ㆍ종교단체ㆍ재단법인이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골시설의 유형이나 설치주체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하여 불합리하거나 교육환경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현재 2009.7.30, 2008 현가2).
- ③ | O |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현재 2008,6,26, 2007현마1366).
- ④ | X |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거나 우대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 · 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 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현재 2010, 2, 25, 2007한바131등).

✓ 정답 ④

2022 경기후보

17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② 「헌법」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이다.
- ③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구별된다.
-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조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 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해설

① | O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헌법원리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u>적법절차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u>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형사절차와 관련시켜 적용

함에 있어서는 형사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현재 2021,1,28, 2020현마264등).

- ② | X |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현재 1992,12,24,92현가8).
- ③ | O | 적법절차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현재 2011,10,25, 2009현마691 등).
- ④ IOI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기본권제한에 국한되는 원칙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래 "적법절차의 원칙은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는 관련되지 않는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현재 1992.12.24.92 현가8)고 하여 기본권제한 관련성을 불문하였으나,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현재 2004.5.14. 2004현나1; 2017.3.10. 2016현나1)고 하여 기본권제한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정답 ②

2022 경간후보

18 청구권적 기본권과 관련된 법 규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원법」 규정에 의하면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6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형사보상을 받을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규지되지 아니한다.
-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구조금의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해설

- ① | X |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청원법 제13조 제1항).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 제2항).
- ② | O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③ | O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 ④ | O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1항

✓ 정답 ①

1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구「학교보건법」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세무사법」조항은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주류 판매업자의 면허를 필요 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주세법」 조항은 면허가 있는 자들끼리의 동업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판매 면허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해설

- ① IOI에 사건 법률조항들은 유치원 주변 및 아직 유아 단계인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서 유치원 주변의 일정구역 안에서 해당 업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러한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격리하기 위하여 필요 · 적절한 방법이며, 그 범위가 유치원 부근 200미터 이내에서 금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현재 2013.6.27. 2011헌바8 등).
- ② IOI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민 신뢰의 확보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에 한정하여 등록취소를 하고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아니라,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현재 2021,10,28, 2020현바22).
- ③ | X | 주류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재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는 달리 특별히 법률을 제정하여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걸쳐 폭넓게 국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주류 유통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류 판매면허업자가 면허 허가 범위를 넘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주류 판매업면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국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판매업자의 등장으로 유통 질서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의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면허의 필요적 취소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주류 판매면허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현재 2021, 4, 29, 2020현 바요?)
- ④ | O |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 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고,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하므로, 성매매 처벌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 화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등 사회 전반의 성풍속과 성도덕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규제는 필요최소한의 조치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현재 2016,3,31, 2013현가2).

✓ 정답 ③

20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에 관련된 표현행위는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 하는 등 기본 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 ②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 부분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시청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조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방송법」조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 ① | O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은 개인적 정치활동과 달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정당에 관련된 표현행위는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등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위 입법목적이 사회복무요원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므로 이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현재 2021,11,25, 2019현마534).
- ② IOI 선거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선거 당일 유권자의 평온을 해치거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전파의 규모와 속도에 비추어 파급력이 작지 않고, 선거일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시점이어서 선거 당일에 무제한적 선거운동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나 반박이 이어질 경우 혼란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선거운동방법의 다양화로 포괄적인 규제조항을 두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간은 선거일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 전까지로 하루도 채 되지 않고,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보장되는 등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형성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현재 2021, 12, 23, 2018현바152).
- ③ IOI 심판대상조항은, 일단 훼손되면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라는 보호법익의 특성과 익명성ㆍ비대면성ㆍ전파성이 크다는 '정보통신망'이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방할 목작'이란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과 '공공연한 거짓 사실의 적시'라는 행위태양이 충족되는 범위에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현재 2021, 3, 25, 2015현바438등).
- ④ | X |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의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편성에 개입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섭'에 이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처벌할 뿐이고, 방송법과 다른 법률들은 방송 보도에 대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의 통로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21,8,31, 2019현바439).

✓ 정답 ④

2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그 집행방법의 변경으로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는 이미 형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집행유예의 취소 시 부활되는 본형은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선고되었던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 결과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무관하다.
- ③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된 이후 다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 및 집행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된다.

해설✓

- ① | O |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그 집행 방법의 변경으로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는 이미 형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현재 2009.3.26, 2008헌바52등).
- ② | O | 집행유예의 취소 시 부활되는 본형은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선고되었던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 결과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원칙과 무관하다(현재 2013.6.27, 2012현바345등).
- ③ | O | 신상공개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를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현재 2003,6,26, 2002한가14).
- ④ | X |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현재 2002, 7.18, 2000현바57 등).

✓ 정답 ④

2022 경간후보

22 통신의 지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과 구별되지 않는다.
- ④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해설

- ① I O I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정보주체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도, 통신비밀보호법(제 15조의2)에 따라 협조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주체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음으로써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바, 이 사건 허가조항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현재 2018 6 28 2012현마191).
- ② IOI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2012도4644).
- ③ | X | 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과 구별된다(현재 2018,8,30, 2016현마263).
- ④ | O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 정답 ③

2022 경간후보

23 현행 「청원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 차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O | 청원법 제6조 제2호
- ② | O |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청원법 제13조 제1항).
- ③ | X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청원법 제21조 제2항).
- ④ | O |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청원법 제9조 제1항).

✓ 정답 ③

24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 ②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된다.
- ③ 국민은 성문헌법의 제·개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만,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없다.
- ④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해설

- ① | O |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 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인 것이다(현재 2004,10,21, 2004현마554등).
- ② | O |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현재 2004,10,21, 2004현대554등).
- ③ | X |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 · 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현재 2004,10,21, 2004 헌마554등).
- ④ IOI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헌재 2004,10,21, 2004헌마554등).

✓ 정답 ③

2022 경간후보

25 헌법상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자의로 민간심의기구의 심의업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②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 ③ 검열은 언론의 내용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사전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 전단의 "허가"와 "검열"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 ④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상업광고로서 「헌법」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해설

① | O |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독립 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운영체계의 지배력을 보유하는 등 행정기관의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 행정기관의 사전검열로 보아야 한다(현재 2020.8.28. 2017현가35 등).

- ② | X | 현행 헌법이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1962년 헌법과 같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는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현재 2020.8.28. 2017 현가35 등).
- ③ | O |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내용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사전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위 조항 전단의 "허가"와 "검열"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허가·검열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5,31, 2000헌바43등).
- ④ | O |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의료기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현재 2020,8,28, 2017현가35등).

✓ 정답 ②

2022 경간후보

26 현행 「국적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가.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나.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라.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① | X | 공무원이 그 직무상 <u>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u>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4조의4 제1항).
- ② | O | 국적법 제14조 제1항
- ③ | O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 ④ **| O |** 국적법 제13조 제3항

✓ 정답 ①

27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조항은 금품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②「변호사법」에서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변호사가 당해 업무를 처리하며 정당한 보수를 받는 방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워칙에 위배된다.
- ③ 구「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된 사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들은 생녹용의 사용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후 이 기준에 따라서 만 생녹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④ 구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화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다

해설✓

- ① | X | 심판대상조항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성, 공정성을 확립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를 수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높은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청이며,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가 금융회사등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현재 2021, 9, 30, 2019현바424등).
- ② | X |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담보하고,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균열을 방지하며, 법률시무 취급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계쟁권리 양수는 변호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사이에 신뢰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에 양수의 대가를 지불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금지할 필요가 있다. 양수가 금지되는 권리에는 계쟁목적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계쟁 중'에만 양수가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로 하여금 계쟁권리를 양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현재 2021,10,28, 2020한바488).
- ③ IXI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통되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공익은 중대하다. 식품의 섭취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건강이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범위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 역시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법정형 또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현재 2021, 2, 25, 2017현바222).
- ④ IOI 심판대상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나, 정당의 추천을 받고 자 공천신청을 하였음에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소속감 또는 당선가 능성 때문에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었다거나 선거운동에 서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현재 2020.9.24, 2018현가15).

✓ 정답 ④

28 우리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를 모두 두었으며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다.
- ②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국회의 양원제를 규정하여 민의원과 참의원이 운영되었으며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선거권 연령을 법률로 위임하지 않고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였다.
-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정수 3분의 2의 추천권을 부여하였다.

해설

- ① | X |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를 모두 두었다. 그러나 <u>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한다</u>는 규정은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규정하였다.
- ② | X | 1948년 제헌헌법은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단원제를 채택하였다. 1952년 제1차 개정헌법과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양원제를 규정하였으나 실시되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양원제는 1960년 제3차 · 제4차 개정헌법에서 실시되었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단원제로 복귀한 이래로 계속 단원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국무총리제 및 국무위원의 연대책임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 ③ | O |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제2공화국헌법)에서 도입된 후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제4공화국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제5공화국헌법)에서 부활하였다. 한편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제2공화국헌법)부터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제5공화국헌법)까지는 선거권 연령을 법률로 위임하지 않고 헌법에서 직접 만 20세로 규정하였다.
- ④ | x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여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 없이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하도록 하였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도록 하면서, 그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도록 하였다.

✓ 정답 ③

2022 경간후보

29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현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 계에서의 인권용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청법」 상 검사만을 지칭한다.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공직선거법」조항은 자료제출요구가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전제하고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③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 ④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 한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 ① | X |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현재 2021,1,28, 2020현만264등).
- ② | O |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데에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인 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 행정기능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선거범죄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선거범죄 조사권의 일종으로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선거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목적의 활동인 수사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현재 2019,9,26, 2016현바381).
- ③ | O |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중립적인 법관의 판단을 통해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의 취지는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 제16조는 제12조 제3항과 달리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주거 공간에 대한 긴급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그 장소에 범죄입증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체포영장 집행시 필요한 경우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무관하게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현재 2018,4,26, 2015현바370등).
- ④ IOI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다만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좌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사후 영장의 청구 방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사후 영장청구 없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한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조사한 결과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는 경우까지도 수사기관이 반드시 체포영장발부절차를 밟게 한 다면, 이는 피의자, 수사기관 및 법원 모두에게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인권침해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피의자 석방 시 석방의 사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긴급체포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현재 2021, 3, 25, 2018현바 212)

✓ 정답 ①

2022 경간후보

30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의 의의와 목적을 고려하면 공익신고 유도 필요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금지조항은 고등학교 진학 기회에 있어서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차별 정도 간에 비례성 을 갖춘 것이다.
- ③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 조항은 10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평등 권을 침해한다.

해설

- ① I O I 공익침해행위의 효율적인 발각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가 필수적인데,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쉬우며,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 이 때문에 보상 금이라는 경제적 지원조치를 통해 내부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외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보상금의 의의와 목적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공익신고 유도 필요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 보상금이 초래한 전문신고자의 부작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익신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점, 외부 공익신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포상금, 구조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21,5,27, 2018현바127).
- ② | X |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의 운영을 통해 고교서열화 및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바, 일반고와 차별화된 교육의 제공을 기대하여 전기학교로 규정하였던 당초 취지와 달리 자사고는 일반고와 교육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었고, 전기모집은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중복지원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자사고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한 평준화지역 소재 학생들은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하여야 하고 그 조차 곤란한 경우 고등학교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 심판대상조항이 중복지원금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하여 아무런 고등학교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 목적과 정도 간에 비례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현재 2019, 4, 11, 2018현마221).
- ③ | X | 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평등원칙 위반여부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입법자는 혼인한 남성에게는 본인의 직계존 · 비속의 재산을, 혼인한 여성에게는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개정 전 조항의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등록의무자 모두 본인의 직계존 · 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개정하면서 이미 재산등록을 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부칙조항을 마련하였으나, 이미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남녀차별적인 인식에 기인하였던 중전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현재 2021, 9, 30, 2019현가3).
- ④ | X | 구 임대주택법령상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의 임차인보다 장기간 동안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위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여 당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통하여 취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므로,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위 차이는 장기간 임대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하게 되는 임대사업자의 수익성과 연결된다.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에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전자의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심판대상조항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상한만을 정하되 상한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하고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분양전환 당시의 객관적 주택가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합이다.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이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를 고려하면,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여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임차인은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임대의무기간의 장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달리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10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평등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현재 2021, 4, 29, 2019현마202).

✔ 정답 ①

3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 후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상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자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해 서는 규정하지 않은 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설✓

- ① IOI 심판대상조항은 가족관계에 관한 각종 신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직계혈족과 자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에 기재되는 본인 · 부모 · 배우자 · 모든 자녀의 각 성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유출된 경우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 가정폭력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가 날로 증대하는 현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함에도 오히려 가정폭력 기해자인 직계혈족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배우 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추가 가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계혈족이 가정폭력 가해자로 판명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현재 2020.8.28, 2018현마927).
- ② | X | 출소 후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 내용에 비추어 대상자의 불편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보안관찰해 당범죄는 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의 제재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출소 후 기존에 신고한 정보에 변동이 생기기만 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의무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하여, 대상자로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현재 2021.6.24, 2017현바479).
- ③ IOI 헌법재판소는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성폭력특례법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조항의 입법 목적은 성범죄의 재범 억제 및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정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것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동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관리조항의 입법목적은 성범죄의 재범 억제 및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이나,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도,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후에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많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현재 2015, 7, 30, 2014현마340등).

④ | O | 수사경력자료는 재수사 등에 대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해당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원에서 소년부송치된 사건을 심리하여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실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현재 2021,6,24, 2018현가2).

✓ 정답 ②

2022 경기후보

32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한 후 선서 의무 부과
-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륨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조항
- ③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의무 부과
- ④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

해설

- ① | X |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 윤리적 판단에 해당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감치의 제재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현재 2014 9 25 2013현마11)
- ② | X | 처벌조항은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므로, 이는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기피자를 제재하는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18.6.28, 2011헌바379등).
- ③ | X | 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 · 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이자 도덕이라고 할 것이므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조항은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의료비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내용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소득세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현재 2008.10.30. 2006현마1401 등).
- ④ IOI 병역종류조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국가안보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병역종류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방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역종류조항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심대한점 등을 종합할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현재 2018,6,28, 2011현바379등).

✓ 정답 ④

3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헌법」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자 구체적 기본 권 도출의 근거로 기능하며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 ② 「헌법」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볼 때 개인의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사후적 · 구체적 규제보다는 사전적 · 일반적 규제방식을 택하여 국민의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헌법」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다.
- ④ 「헌법」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나 이로부터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 ① | X | 헌법 제119조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동 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현재 2002,10,31,99헌바76등; 2017,7,27,2015헌바278등).
- ② | X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되도록 사전적・일반적 규제보다는, 사후 적、구체적 규제방식을 택하여 국민의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현재 2012.8,23, 2010현가65).
- ③ | X | 우리 헌법은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 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현재 2003,11,27, 2001헌바35).
- ④ | O |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입법자는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득의 재분배라는 관점만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는 여러 목표, 예컨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고용의 안정"등을 함께 고려하여 서로 조화시키려고 시도하여야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무조건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정책적으로 항상 최우선적인 배려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현재 1999, 11, 25, 98현마55).

✓ 정답 ④

34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으로 인정한 경우를 O,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X로 표시한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가.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 나,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
- 다. 개인택시면허
- 라 관행어업권
- 마. 건강보험수급권
- 바 이동전화번호
- 사, 불법적인 사용의 경우에 인정되는 수용청구권
- ① 가(O), 나(X), 다(O), 라(O), 마(X), 바(X), 사(O)
- ② 가(O), 나(O), 다(X), 라(X), 마(X), 바(O), 사(X)
- ③ 가(X), 나(O), 다(O), 라(X), 마(O), 바(X), 사(O)
- ④ 가(X), 나(X), 다(O), 라(O), 마(O), 바(X), 사(X)

- 가. 【×】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또는 회원권'은 상공회의소라는 법인의 의사형성에 관한 권리일 뿐 이를 따로 떼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상공회의소의 회원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상공회의소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공회의소의 재산'은 법인인 <u>상공회의소의 고유재산이지 회원들이 폐업이나 영업소의 이전 등의 경우에 지분에 따라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현재 2006,5,25, 2004현가1).</u>
- 나. | x | 시망일시금 제도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가입자 등의 가족에게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인바,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수급 기대권이 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사회보장적 급여라고 한다면 사망일시금은 사회보험의 원리에서 다소 벗어난 장제부조 적 '보상적 성격을 갖는 급여로서 연금제도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한 급여는 아니다. 사망일시금은 수급자의 생존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고, 수급자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그 권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며, 수급자의 생존확보를 위한 제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망일시금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망일시금 한도 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19,2,28, 2017현마432).
- 다. | O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장기간의 모범적인 택시운전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였거나, 고액의 프리미엄을 자급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한 사람들이므로 개인택시면허는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다(현재 2012.3.29. 2010헌마443등).
- 라. | O |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행어업권(관행에 의한 입어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존속에 있어서도 공동어업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으며 공동어업권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서도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현재 1999, 7.22, 97헌바76등).
- 마. IOI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가입자가 기여금의 형태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본질상,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가입자의 재산상의 부담을 전보하여 주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므로 의료보험수급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갖는다.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현재 2003.12.18. 2002헌바1).

- 바. | x |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청구인들이 오랜 기간 같은 이동전화번호를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이동전화번호 관련 정책 및 이동전화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 청구인들이 이동 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인 재산권을 가진 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13, 7, 25, 2011현마63등).
- 사. | x | 입법자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설정은 기존에 성립된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한 것에 해당되므로, 역으로 그 형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바 '불법적인 사용의 경우에 인정되는 수용청구권'이란 재산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그러한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현재 2005.7.21, 2004현바57).

✓ 정답 ④

2022 경간후보

35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주 이내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②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소(訴)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한 「특허법」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국가배상사건인 당해사건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재심제기기 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헌법재판소법」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① | X | 독촉절차에서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단기로 제한하는 것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독촉절차의 취지에 비추어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그때부터 이의신청 기간을 기산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현재 2020,12,23, 2019현비353).
- ② | O | 특허권의 효력 여부에 대한 분쟁은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은 특허법이 열거하고 있는 무효사유에 대해 특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청구인과 특허권자가 다툰 후 심결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심결에 대하여 불복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이 정하고 있는 3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특허무효심결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현재 2018.8.30, 2017현바258).
- ③ IOI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등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현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제기기간을 둔 것이 입법형성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헌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재심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는 점,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이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30일이라는 재심제기기간이 재심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할 정도로 짧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현재 2020.9.24, 2019현바130).
- ④ | O |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제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됨에 따라 금요일 오후에 결정문을 송달받을 경우 주말동안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며, 우편 접수를 통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월요일 하루 안에 발송 및 도달을 완료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 구권을 침해한다(현재 2018,12,27, 2015현바77등).

✓ 정답 ①

2022 경기후보

36 대한민국의 과거사 정리 과업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대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②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구「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 ③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 ④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훼손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① | X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제3자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위원회는 음성적 모집 여부, 인권유린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보상금 액수를 정하므로 보상금에 특수임무교육훈련에 관한 정신적 손해 배상 또는 보상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된다는 점, 국가배상청구에 상당한 시간과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보상금등 지급결정은 비교적 간이 · 신속하므로 특임자보상이 국가배상에 비해 일률적으로 과소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현재 2011, 2, 24, 2010현바199; 2021, 9, 30, 2019현가28).
- ② | O | 민주화보상법 및 5·18보상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법상 보상금은 손해 전보를 의미하는 배상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분류되는데, 보상법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 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상금의 성격과 중첩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현재 2018,8,30, 2014현박180등; 2021,5,27, 2019현가17).
- ③ IOI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한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사인간 불법행위 내지 일반적인 국가배상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에 '주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나, '객관적 기산점'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불법행위 시점을 객관적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현재 2018,8,30, 2014현바148등).
- ④ | O |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 수급권은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보상금 조항이 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자는 그 희생의 정도가 다른 관련자에 비하여 크고, 그 유족도 다른 관련자의 가족에 비하여 희생의 정도 및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더 크므로, 이 사건 보상금 조항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등은 국가가 관련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의 액수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생활지원금 조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에 한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현재 2019, 4, 11, 2016현마418).

✓ 정답 (1)

2022 경간후보

37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조항에 규정된 '추행'
-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판매 목적 소지 금지조항에 규정된 '유시군복'
- 다. 「도로교통법」상 갓길 통행 금지조항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부득이한 사정'
- 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조항에 규정된 '그 밖의 정치단체'
- 마.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조항에 규정된 '건조물'
- 바 「도로교통법」상 위험은전치사상죄 벌칙조항에 규정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 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벌칙조항에 규정된 '다량의 토시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

(1)	1개

② 2개

③ 3개

(4) 47H

- 가. | x | 심판대상조항의 '추행'이란 강제추행죄의 '추행'과 마찬가지로, <u>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u>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심판 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및 추행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 항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추행'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현재 2021, 3, 25, 2019현바413).
- 나. | X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가 군인 아닌 자의 군 작전 방해 등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 방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유시군복이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인이 착용하는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을 의미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법상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시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현재 2019,4,11, 2018현가14).
- 다. | x | '부득이'의 사전적 의미는 '마지못하여 하는 수 없이'로, 금지조항은 부득이한 사정의 하나로 '자동차의 고장'을 예시하고 있다. 결국 금지조항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차로로의 통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는 금지조항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확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지조항 중 '부득이한 사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현재 2021,8,31, 2020현바100).
- 라. | O |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엄격한 기준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 특히 단체는 국가 정책에 찬성・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주장과 우연히 일치하기만 하여도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u>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u>한다(현재 2020.4.23. 2018헌마551).

- 마. | × |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는 '건조물'이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시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그 위요지를 포함하며, 위요지는 건조물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관리인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위요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므로(대법원 2010,3.11,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법 집행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현재 2020,9.24, 2018현바383).
- 바. 【×】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연혁 등을 종합할 때,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2006. 6. 1.(주취운전 금지의무가 제41조에서 제44조로 이동된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규정인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u>이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u>,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u>좌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u>처벌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현재 2021.11.25, 2019현바446).
- 사. | O | 이 사건 벌칙규정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토사'의 의미나 '다량'의 정도, '현저히 오염'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감독 행정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현재 2013, 7, 25, 2011현가 26등).

✓ 정답 ②

2022 경간후보

38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공금 횡령 비위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 확정 전 징계부가금 집행은 무죄추정원 칙에 위배된다.
- ②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하더라도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 ③ 소년보호사건에서 1심 결정 집행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 ④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나,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 X |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법 위반행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불이익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공소제기의 기초를 이루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행위를 근거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윤리적 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징계부가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법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곧바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현재 2015.2,26, 2012현바435).

- ② | X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유죄의 개연성을 전제로 업무정지라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은 의뢰인의 이익과 법적 절차의 공정성·신속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의 의결을 거쳐 업무정지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변호사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또한 원칙적으로 6개월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이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엄격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현재 2014 4 24 2012현바45).
- ③ | X |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형사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법원이 소년의 비행사실이 인정되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년원 송치처분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과는 무관하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며, 원 결정에 따라 소년원 송치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즉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항고심에서는 1심 결정과 그에 따른 집행을 감안하여 항고심 판단 시를 기준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판단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는 무죄추정원칙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현재 2015,12,23, 2014현마768).
- ④ IOI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시 사복착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도록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민사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의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민사재판의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수형자가 민사법정에 출석하기까지교도관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므로 수용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재소자용 의류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격권과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제한적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제한적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현재 2015,12,23, 2013현마712).

✓ 정답 ④

2022 경간후보

39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연결된 것은?

- ① 우리 대한민국-조국의 민주개혁-세계평화와 인류공영
- ② 5 · 18 민주화운동의 이념-자유민주적 기본질서-평화적 통일의 사명
- ③ 민족의 단결-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 ④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해설♥

① | x | ② | x | ③ | O | ④ | x | 현행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우리 대한 민국'('우리 대한국 만'으로 명시됨),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명문 규정 없음),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총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으로 서술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제10조에 명시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제9조에 명시됨)은 헌법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다.

✓ 정답 ③

2022 경간후보

40 변호사 갑(甲)은 수형자 을(乙)을 접견하고자 하나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60분간 이루어지는 변호사접견 대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10분 내외의 일반접견만 가능하다는 교정당국의 답변을 받았다.

이 답변의 근거가 되는 법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6.28. 법무부령 제87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등 신청)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사건과 무관하게 수형자를 접견하는 소위 '집사 변호사'의 접견권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 ②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 접견권 남용행위 방지에 실효적인 수단이며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③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접견을 금지하고 있어 수형자와의 접견을 통한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다.
- ④ 심판대상조항은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접견에 대한 제한의 강도가 커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불이익도 크다는 면에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해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사건과 무관하게 수형자를 접견하는 소위 '집사 변호사'의 접견권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지하게 소 제기여부 및 변론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변호사라면 일반접견만으로는 수형자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기가 어렵고, 수형자 역시 소송의 승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견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변호사를 신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접견을 금지하고 있어 수형자와의 접견을 통한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또한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접견에 대한 제한의 강도가 커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불이익도 크다는 면에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현재 2021,10,28, 2018한마60).

✓ 정답 ②